

의안번호	2204735
의 퇴 인	한병도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21.
추계번호	24F431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－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232.3억원, 2029년 232.3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,161.5억원(연평균 232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 65조)	소계	-232.3	-232.3	-232.3	-232.3	-232.3	-1,161.5	-232.3
	취득세	-176.6	-176.6	-176.6	-176.6	-176.6	-883.0	-176.6
	재산세	-55.7	-55.7	-55.7	-55.7	-55.7	-278.5	-55.7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5조 (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)	○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내용: (취득세)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율 1.2%p 감면 (표준세율 2~2.02%) (재산세)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간 50%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65조 (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정을 반영하여 추계

- (취득세) COVID-19에 따른 항공기 취득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이후 감면실적 평균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 - COVID-19에 따라 2019~2021년 동 감면에 따른 감면실적은 이전 대비 감소

[표 2]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: 2018~2023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건수	53	43	12	22	31	39
감면액	246	132	9	7	124	229
	-	(-46.3)	(-93.3)	(-23.8)	(1,742.7)	(85.0)

주: 괄호()는 감면액의 전년대비 증감률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재산세) 최근 2년(2022~2023년)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 - 2021년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어 세수효과 추계시 2022년 이후 감면실적을 사용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추계방법

□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계

- (취득세) COVID-19에 따른 항공기 취득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이후 감면실적 평균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: 2022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연평균 감면액
감면건수	31	39	—
감면액	123.9	229.2	176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재산세) 2021년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의 확대를 반영하여 최근 2년(2022~2023년)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2021년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2022년부터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 적용

[표 4]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 추이: 2022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연평균 감면액
감면건수	173	149	—
감면액	61.7	49.7	55.7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232.3억원, 2029년 232.3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,161.5억원(연평균 232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65조)	소계	-232.3	-232.3	-232.3	-232.3	-232.3	-1,161.5	-232.3
	취득세	-176.6	-176.6	-176.6	-176.6	-176.6	-883.0	-176.6
	재산세	-55.7	-55.7	-55.7	-55.7	-55.7	-278.5	-55.7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